

구미시 국궁장(금오정)
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국궁장(금오정) 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0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국궁장(금오정)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해 운영 위탁 업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,
- 국궁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,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들의 여가생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구미시 국궁장(금오정)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(추진근거)
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
- 「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 제18조

○ (필요성)

- 국궁장의 전문적·효율적 관리 및 운영
- 국궁의 특수성을 감안 전문가의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필요

다. 위탁사무 내용 : 구미시 국궁장(금오정) 관리 및 운영 전반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위 치 : 구미시 3공단1로 219 (동락공원 내)
- 사 업 비 : 700백만원(도비 210 시비 490)

- 주요시설 : 부지 6,611m², 연면적 604.8m² (지상2층, 한옥형태)
사대 28, 과녁 4개(145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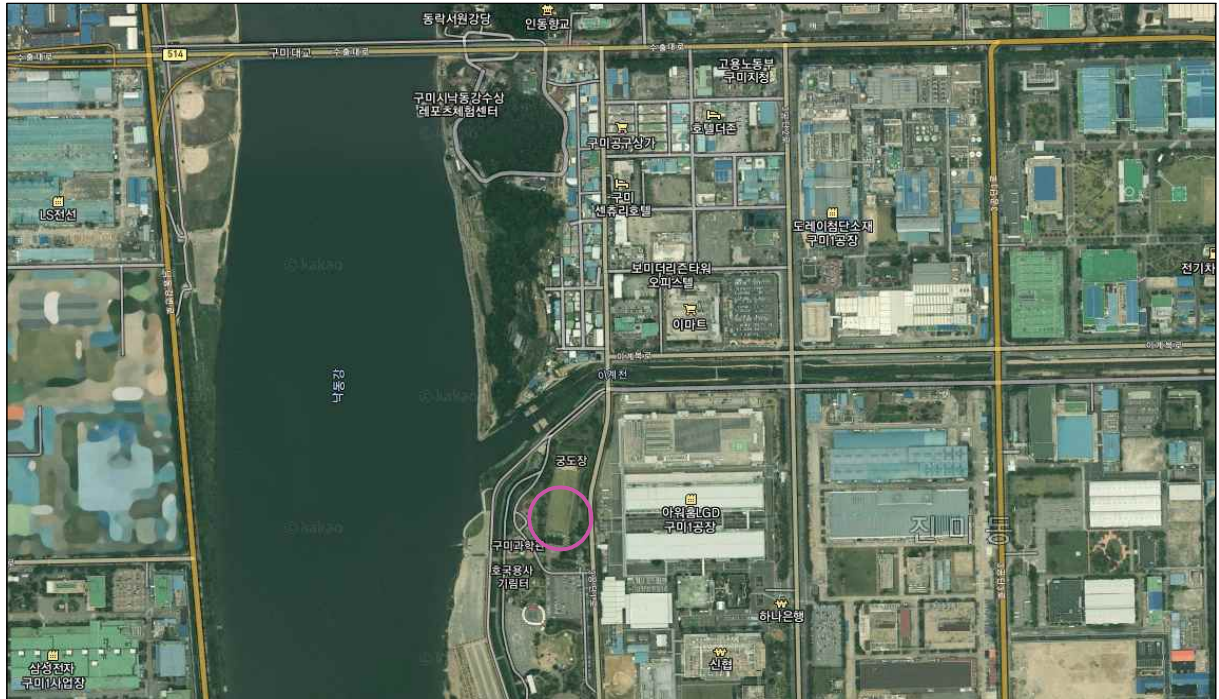
마. 위탁기간 : 위·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~ 2023. 12. 31.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 모집

사. 소요예산 : 50백만원

사진대지

□ 위 치 도



□ 현장 사진

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, ② 생략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생략

□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27조 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~ ⑥ 생략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⑧ 생략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, ⑤ 생략

□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수탁기관을 선정 할 때는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 선정방법)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□ 「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

제18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공단 또는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

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.

③ 생략

소 관 부 서		체육진흥과
입 안 자	과 장	지 대 근
	담 당	강 호 근 (480-5011)